

#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에 관한 연구: 수산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strictiveness Index of Product Specific  
Rule(PSR) under FTA: Focusing on the Fishery product

허 윤 석\* Yun-Seok Hur

박 명 섭\*\* Myong-Sop Pak

박 진 우\*\*\* Jin-Woo Park

##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엄격성지수와 협정간 비교

IV. 수산물 특화형 엄격성지수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책임연구원, 공동저자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주제어〉 엄격성지수(RI), 원산지결정기준(PSR), 수산물, FTA

## I.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15개 FTA를 발효 중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국가기준으로는 52개국과 FTA를 발효하고 있는 FTA 선도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FTA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다수의 조건과 규정,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얼마만큼 준비하고 습득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다. 즉, FTA를 통하여 경제 영토를 선제적으로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원산지상품으로 수출입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자국을 원산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FTA에 의한 특혜과세의 혜택을 체결국가 간에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두 번째는 운송 요건으로 체결상대국 간에 직접운송원칙 등의 운송과 관련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송 요건은 협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2가지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거래당사자 요건이다. 즉, 거래 당사자가 FTA 체결국 국민 또는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산지 증명요건이다. 원산지 상품을 수출입하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데, 대부분 수출입 거래가 마무리된 시점 이후에 검증을 통하여 상기의 요건들을 증명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 중 원산지 상품요건은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나 공급자,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판정하는 것이 원산지 규정이다.

안재진(2008)은 원산지규정은 협정의 이행과 활용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데, 제3국

의 불법 특혜를 검증하고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박진우(2017)는 체결국 간 FTA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山神秀樹·牛島咪子(2009)이 언급한 FTA 특혜관세 인하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FTA의 적용 품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원산지(country of origin)규정이며, 이명구(2007)는 원산지규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관세 인하의 대상 여부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장근호(2005)는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 : RoO)은 각 FTA 마다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으며, 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확인 및 표시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준이나 규정절차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FTA원산지규정은 총칙의 개념을 가지는 일반적인 기준과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각칙의 개념인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일반기준은 전체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각 품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과 차이를 가진다. 품목별 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각 개별 품목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별로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난이도에 따라 엄격성을 분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단계화 한 것이 엄격성 지수이며, 이를 통해 각 품목의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규정의 엄격함을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엄격성 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생산 과정, 비용 그리고 가치가 변형이 되는 품목들에 대한 측정 지수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에 특화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엄격성 지수를 통하여 산출되는 지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생산과정의 특성 및 품목 자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품목별들에 따른 정도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연구 범위를 수산물 무역의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 체결된 15개 협정 중 수산물 교역이 많은 4개 협정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산물 무역의 대상 품목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품목 중 수산물은 HS 6단위 기준으로 242개 품목이 해당하며, 이들 품목들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12류, 제13류, 제15류, 제16류, 제21류, 제23류, 제25류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존 엄격성지수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보다 적합한 신규 지수를 개발 또는 일부 수정 및 정밀화함으로써 주요 협정의 수산물 엄격성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엄격성지수에 대해서는 직접 전 협정의 협정문을 통해 유형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개선 전, 후를 기반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25호) 제2조 4항에서는 원산지(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한 국가의 식민지·속령·보호령도 포함된다. 하지만 NAFTA나 ASEAN과 같은 정치·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상대국 중 수산물 분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미국·아세안·EU이다. 중국과 미국과 체결한 FTA는 각 개별국가와 협상을 체결한 협정이며, 각 국은 원산지가 될 수 있다. 단 EU와 ASEAN과의 FTA는 우리나라와 특정한 형태의 지역협력체간의 체결 협정이다. 이 경우, EU와 ASEAN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EU와 ASEAN과의 FTA에서는 지역협력체에 속해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 FTA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역협력체와 우리나라 간 체결한 형태의 협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와 한·EU FTA는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세안은 각각의 관세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국가이며, EU는 회원국 전체를 통틀어 하나의 관세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실제로 아세안은 여러 국가 간의 협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EU FTA는 우리나라와 EU라는 하나의 경제공동체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각 협정은 FTA 원산지규정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형 또는 미주형으로 불리는 형식으로 체결된 협정이다. 이는 NAFTA에 적용된 FTA 원산지규정을 발전시켜 유사한 형태로 협상이 체결되었다. 반대로 한·중, 한·EU, 한·아세안은 유럽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FAN-EURO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식이며, 미국형과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FTA 원산지규정은 WTO의 원산지규정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WTO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 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FTA의 협정문 상에 명시함으로써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형화하면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기준은 총칙의 개념으로 모든 품목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품목별 기준은 개별 품목 하나하나에 적용 되는 기준이다.

완전생산 된 물품을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완전생산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해서 원산지를 판정한다. 여기에서 품목별 기준은 완전생산 되지 않은 불완전생산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 1) 완전생산품

완전생산품은 한 국가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수행하여 완전하게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 완전생산은 사실 단순해 보이나 비교적 복잡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한 국가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와 같은 영역의 범위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완전한 생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기준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총칙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협정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품목별 기준으로 선정하기도 하는 데, 이는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인교(2005)에 따르면 주로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이나 광산품 등 1차 산품이 이에 해당되며, 자국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도 이에 해당된다. 이는 방호경(2004)의 연구에서는 한 국가에서 수확하고 채취한 식물이나 광물 이라든지, 혹은 한 나라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의 경우와 같이, 한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의 경우 원산지는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수산물의 경우 완전생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영해 내의 생산이다. 이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과 상관없이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둘째, 영해 밖의 생산이다. 이 경우 기국주의를 적용하는 데, 자국산 선박의 범위로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협정별로 기국요건 및 등록요건 인정여부와 원산지 목적상 영해(territorial sea)의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나 공해(outside territorial sea) 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선상가공품의 경우 원산지의 인정은 획득한 선박이 자국일 때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셋째는 양식일 경우이다. 양식 생산인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생산이 인정되나 수입한 치어를 자국에서 양식(fish farming)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인정여부가 각 협정에 따라 상이하다.

## 2) 실질적 변형기준

완전생산기준과는 달리,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신규(2006)는 실질적 변형이란

‘특정 물품의 생산·가공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명칭·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였다. 예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산 재료들과 더불어 물품을 가공·생산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가공생산품이 이에 해당된다. 실질적 변형의 판정은 세 번변경(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VC: Value Content)기준과 특정 (주요)공정 기준(SP : Specific Process)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기준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정인교(2004)는 이를 기준들마다 상이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며, 이에 물품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 완전생산기준이나 실질변경기준을 절대성 문제로 발생하는 왜곡현상을 보완하고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방지하고자 보충적 원산지 규정을 사용한다. 보충기준으로는 원산지인정 최소기준(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의 특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부속품 등의 특례 등이 사용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8호] 제2조 9항에서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세번(tariff classification)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통합목록분류표(HS)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완성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다를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사용된다. 즉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9항에 정의 하고 있듯이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세번(tariff classification)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 번이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산업구조 및 경쟁력 등에 따라 FTA 대상국별로 원산지기준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단위변경기준(Change of Chapter :CC)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위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 CTH)이며, 6단위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 CTS)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HS품목 분류체계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는 품목도 많다고 설명 하고 있다.

대외정책연구원(2008)에 따르면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보통 수입재료의 가격을 완제품의 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부가가치기준의 계산식은 공제법(Build-down Method : BD), 직접법(Build-up Method:BU), MC 방식(value of import content/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제품가격 : 물품의 공장도 가격(Ex-Works)으로써,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하는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 등이 협정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대외정책연구원(2008)의 연구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원가회계를 이용하기에 정보유출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가공공정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gress Criteria)은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라 하고 있다. 즉, 제조·가공 공정 중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정재우(2012) 등은 이를 적용할 시에는 커피 볶음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의류는 재단을 수행한 나라,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로 판정된다고 하였다.

〈표 1〉 원산지결정기준 유형별 장단점 및 특징

기 준	장점	단점	특징
세번 변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판정 조건이 일관적이고 객관적이며 신속·정확</li> <li>- 집행자와 운영자가 쉽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조자가 변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과 예측가능성이 높음</li> <li>-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변경 여부 확인이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관세분류에 맞추어 품목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li> <li>- 분류품목은 기술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li> <li>- 국가별로 상이한 품목표를 작성할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적으로 HS코드가 세분화 될수록 완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음</li> </ul>
부가 가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이 간단 명료함</li> <li>- 품목별 특정 규정보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함</li> <li>- 상업상의 기록 또는 서류 등에 의해 원산지의 입증 및 결정이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법이 복잡하며, 동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계적이 회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li> <li>- 환율 변동과 원재료의 가격에 의해 원산지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li> <li>- 자의적인 원가조작이 가능하며, 국가별로 회계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마찰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업들에게 서류제출부담 및 이행비용이 발생하고, 사후검증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의 정도가 원산지를 판정함</li> <li>- 수입된 재료에 대한 높은 부가가치를 적용하는 방법은 더욱 제한됨</li> </ul>
가공 공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하고 명백함</li> <li>- 제조자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대체로 용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준비서류가 복잡하며, 인정 받는 가공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요구</li> <li>- 새로운 제품의 생산공정을 반영하기 곤란하며, 기술적 발전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정하 필요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가 많아 질수록 제한 적임</li> </ul>

자료 : 대외정책연구원(2008), “FTA별 부가가치기준 적용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 Ⅲ. 엄격성지수 및 협정간 비교

#### 1.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엄격성지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하고 있다. Estevadeordal(2000)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고, 이후 2004년 Estevadeordal & Suominen의 연구 등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s)에 관한 연구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의 엄격성에 대해 다루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점점 엄격성지수를 통해 FTA 원산지규정의 충족의 난이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엄격성지수가 높아지면 FTA 활용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우선, FTA 특혜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원재료의 관리가 필요하거나, 생산 공정을 추가하는 등 생산비가 증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수출입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는 FTA의 활용을 포기 하게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엄격성지수인 Estevadeordal의 제안한 엄격성지수는 지수를 7단계로 나누고 있다. 지수 7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며, 지수가 낮아질수록 엄격성이 낮아진다. 엄격성지수가 높을수록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각 단계에 따라 난이도의 정도를 측정 하지는 않는다. 이는 엄격성지수가 FTA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유형화 하여 나열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세번변경기준을 예로 들면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을 각 단위별로 난이도를 나누어 놓은 형태이다. 단순히 2단위보다 4단위 변경이 더 충족이 쉽다는 형태이며, 실제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충족의 난이도는 각각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유형에 따라 각 난이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계별로 표시 하여 엄격성지수를 제안 하고 있다.



〈표 2〉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지수	요 건
7	CC( $Y \leq CC \& TECH$ or WO) (지수 6보다 엄격하되, CC+특정공정(TECH) 또는 완전생산기준(WO))
6	CTH&RVC( $Y \leq CC$ ) (지수 5보다 엄격하되, HS 2단위 변경(CC))
5	CTH( $Y \leq CTH \& RVC$ , $RVC \leq 50\%$ ) (지수 4보다 엄격하되, CTH+RVC, 부가가치 단일기준 50%초과)
4	CTSH&RVC( $Y \leq CTH$ , $RVC \leq 50\%$ ) (지수 3보다 엄격하되, HS 4단위 변경(CTH), 부가가치 단일기준 50%이하)
3	CTSH( $Y \leq CTSH \& RVC$ ) (지수 2보다 엄격하되, CTSH+역내부가가치(RVC))
2	CI( $Y \leq CTSH$ ) (지수 1보다 엄격하되, HS 6단위 변경(CTSH))
1	$Y \leq CI$ (HS 6단위 이상에서 변경)

자료 : Estevadeordal(2000)

엄격성지수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유형화 해보면 제13류는 4개 협정의 각각 원산지결정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류도 4개 협정이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다. 단, 엄격성지수는 한·EU가 4와 7, 아세안이 4, 미국이 6, 중국이 7이다. 수산물 교역 대상 주요 협정에서는 3이하의 엄격성을 가지는 수산물 품목은 없으며 6에 해당하는 품목이 가장 많다.

〈표 3〉 엄격성지수별 PSR(EU · 미국 · 중국 · 아세안)

류	엄격성 지수			
	7	6	5	4
1	· WO	· CC		
2	· WO	· CC		
3		· CC · CC OR NCS(MR) or CC		· RVC
5	· WO	· CC		
12	· WO	· CC		
13	· WO	· CC	· RVC(70)	· CTH
15	· WO	· CC		· CTH · RVC OR CTH
16	· CC(MR) OR RVC40(MR) · MR	· CC · CC OR RVC · CC(ECTC)		· RVC · RVC OR CTH · RVC · CTH(ECTC)
21		· CC · CTH(TECH)		
23	· WO	· CC · CC OR RVC		
25	· WO			· RVC OR CTH · CTH(ECTC) · CTH

자료 : FTA협정문 기반으로 저자 작성

## 2.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적용 분석

### 1) 한·EU FTA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의 주요 상대국은 중국, 미국, 아세안, EU 등으로 이들 모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를 기체결한 국가이다. 이 4개 국가의 수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호주의 Estevadeordal의 연구를 통한 엄격성지수를 분석하였다.

한·EU FTA의 경우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는 6.92로 지수의 최고 수치가 7이기 때문에 평균 6.7이 넘는 이 수치는 아주 높은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로 최고의 엄격성지수에 해당하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적인 농수축산물에 해당하는 제1~5류에서는 모두 완전생산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류 189개 품목으로 전체 수산물 품목의 78%에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엄격성지수는 4로 4단위 세 번변경기준, 주로 가공품이 이에 해당한다.

〈표 4〉 한·EU FTA 수산물 엄격성지수

HS code(chapter)	엄격성지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품목수
1	7	WO	4
2	7	WO	4
3	7	WO	189
5	7	WO	3
12	7	WO	2
13	4	CTH	1
15	7	WO	1
	4	CTH	3
		CTH(ECTC)	1
16	7	MR	30
21	6	CTH(TECH)	1
	4	CTH(ECTC)	1
23	7	WO	1
25	4	CTH(ECTC)	1
지수 평균 6.92			242

자료 : 저자 작성

## 2) 한·미 FTA

한·미 FTA의 경우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는 평균 5.99로 상대적으로 최고치에 가깝기 때문에 높은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의 다른 협정에 비하면 1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의 특징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3류의 189개 품목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제3류는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동일류 내에서 변동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로와 양식 생산과정에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완전생산과 동일한 수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 경우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은 5.99로 타 협정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유사한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미 FTA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물품을 불완전생산품으로 취급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면 일부 품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왜곡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

〈표 5〉 한·미 FTA 수산물 엄격성지수

HS code(chapter)	엄격성지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품목수
1	6	CC	4
2	6	CC	4
3	6	CC	152
		CC OR NCS(MR) or CC	37
5	6	CC	3
12	6	CC	2
13	6	CC	1
15	6	CC	5
16	6	CC	29
		CC(ECTC)	1
21	6	CC	2
23	6	CC	1
25	4	CTH	1
지수평균 5.99			242

자료 : 저자 작성

### 3) 한·중 FTA

한·중 FTA의 경우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는 평균 6.61이다.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평균 6이 넘는 이 수치는 아주 높은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총 4개 방식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 이는 완전생산기준(W0),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부가가치기준(RVC)이다.

한·EU FTA와 비교하여 지수가 낮은 원인은 제16류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한·중 FTA는 제16류의 30개 품목에 엄격성지수 7인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한·중 FTA에서는 엄격성지수 4인 부가가치기준(29개 품목)과 엄격성지수 6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협정의 지수 평균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한·중 FTA 수산물 PSR 및 엄격성지수

HS code(chapter)	엄격성지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품목수
1	7	WO	4
2	7	WO	4
3	7	WO	189
5	7	WO	3
12	7	WO	2
13	7	WO	1
15	7	WO	5
16	6	CC	1
	4	RVC	29
21	4	CTH	2
23	6	CC	1
25	7	WO	1
지수 평균 6.61			242

자료 : 저자 작성

#### 4)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의 경우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는 평균 6.74이다. 본 협정 또한 한·EU와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최고 지수가 7이기 때문에 평균 6.74인 수치는 아주 높은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는 분석 대상 4개 협정 중 가장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각 류별로 다른 방식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 특히, 제13류부터 제25류의 수산물인 경우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엄격성지수로는 4,5,6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품목에서 다양한 선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는 충족하기 쉬운 방식을 선택하여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류별로 상이함이 다른 협정에 비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수출입하는 당사자인 경우 복잡성이 클 수 있다.

〈표 7〉 한·아세안 FTA 수산물 PSR 및 엄격성지수

HS code(chapter)	엄격성지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품목수
1	7	WO	4
2	7	WO	4
3	7	WO	186
	4	RVC	3
5	7	WO	3
12	7	WO	2
13	5	RVC(70)	1
15	4	RVC OR CTH	5
16	7	CC(MR) OR RVC40(MR)	16
	6	CC OR RVC	6
	4	RVC OR CTH	2
	4	RVC	6
21	4	RVC OR CTH	1
	7	RVC(MR)	1
23	6	CC OR RVC	1
25	4	RVC OR CTH	1
6.74			242

자료 : 저자 작성

## IV. 수산물 특화형 엄격성지수

### 1. 수산물의 FTA 엄격성지수 개발

앞에서 적용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엄격성지수는 Estevadeordal(2000)의 연구를 통해 고안하고 발표한 이후 Estevadeordal & Suominen(2004)의 연구 등에 의해 발전된 엄격성지수를 적용한 분석 결과이다. 하지만 적용된 엄격성지수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성지수에 품목별 특징과 생산·가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엄격성지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엄격성지수는 7단계로 나뉘어 있는 기존의 Estevadeordal의 유형을 차용하였다. 기본적인 구조는 기존의 엄격성지수와 동일하게 7단계로 구성하였으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단계에서 실제로 발생 할 수 있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일부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엄격성지수와 동일하게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지수가 부여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은 단위가 클수록 엄격성은 낮아진다. 이는 기존의 엄격성지수와 동일하다.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RVC)이나 가공공정기준(TECH)이 결합되어 두 기본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는 한 단계 엄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부분도 기존의 엄격성지수와 동일하다.

기존의 지수와 가장 큰 차이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제3류의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동일류 내에서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즉 제0301호의 물품이 제3류 내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 되는 것으로, 제1,2류 등 다른 류의 물품이 3류로의 변경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제3류의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한 엄격성을 부여하였다.

〈표 8〉 수산물 특화 엄격성지수

지수	HS chapter										
	3	1	2	5	12	13	15	16	21	24	25
7	Y≤CC or CC&TECH or WO	CC(Y≤CC&TECH or WO)									
6	-	CTH&RVC(Y≤CC)									
5	CTH(Y≤CTH&RVC, RVC) 50%										
4	CTSH&RVC(Y≤CTH, RVC≤50%)										
3	CTSH(Y≤CTSH&RVC)										
2	CI(Y≤CTSH)										
1	Y≤CI										

자료 :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를 기반으로 저자 개발

수산물에 특화한 엄격성지수를 적용해 기존의 엄격성지수와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다른 품목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제3류에 해당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한 7단계에 해당하게 되어, 제21류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에서 엄격성지수 7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엄격성지수에서는 제25류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에서 엄격성지수 6을 적

용하고 있었으나,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본 엄격성지수에서는 제3류와 제25류에서 엄격성지수 6단계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수 5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제13류 뿐이며, 대부분 지수 7과 6을 적용하고 지수 4도 제3류, 제13류, 제15류, 제16류, 제25류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공이 발생하는 품목인 경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표 9〉 수산물 특화형 엄격성지수별 PSR(EU·미국·중국·아세안)

류	엄격성 지수			
	7	6	5	4
1	· WO	· CC		
2	· WO	· CC		
3	· CC · CC OR NCS(MR) or CC			· RVC
5	· WO	· CC		
12	· WO	· CC		
13	· WO	· CC	· RVC(70)	· CTH
15	· WO	· CC		· CTH · RVC OR CTH
16	· CC(MR) OR RVC40(MR) · MR	· CC · CC OR RVC · CC(ECTC)		· RVC · RVC OR CTH · RVC · CTH(ECTC)
21		· CC · CTH(TECH)		
23	· WO	· CC · CC OR RVC		
25	· WO			· RVC OR CTH · CTH(ECTC) · CTH

자료 : FTA협정문 기반으로 저자 작성

## 2. 수산물 특화 엄격성지수 분석

앞장에서는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 한·아세안 FTA에 대한 엄격성 지수를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로 분석 하였다. 이 4개 협정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분야 주요 교역 대상인 FTA라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한 엄격성지수를 통해 엄격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한·미 FTA에서 엄격성지수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엄격성 지수



를 적용하며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은 평균 5.992의 평균 지수를 보이고 있다. 총 지수 7중 5.99로 다른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6단계 육박 하는 것으로 엄격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엄격성지수를 적용할 경우 6.77의 평균 지수를 기록하였다. 지수 7에 육박하는 높은 평균지수로 앞장에서 분석 한·EU FTA는 6.92, 한·아세안 FTA는 6.74, 한·중 FTA는 6.61로 나타난 다른 협정들과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표 10〉 한·미 FTA 수산물 PSR 및 엄격성지수

HS code(chapter)	엄격성지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품목수
1	6	CC	4
2	6	CC	4
3	7	CC	152
		CC OR NCS(MR) or CC	37
5	6	CC	3
12	6	CC	2
13	6	CC	1
15	6	CC	5
16	6	CC	29
		CC(ECTC)	1
21	6	CC	2
23	6	CC	1
25	4	CTH	1
지수 평균 6.773			242

자료 : 저자 작성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15개의 FTA 중 주요 수산물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대한 엄격성지수를 분석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엄격성지수를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엄격성지수의 한계를 도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수를 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산출지수와 비교 연구를 해 보았다.

해양수산부(2016),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수산물 2016」에 따르면, 현재 발

효 중인 모든 FTA에서 수산물은 HS 6단위 기준 242개 품목에 달한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세계 공통으로 관세, 무역통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HS협약의 부속 품목분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EU, 중국 등 170여 개국에서 사용하며, 협약 가입국은 세계 공통 6단위를 국내 수용하여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세계 공통의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HS2012 기준으로 무역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은 무려 5,205개에 달한다. 6단위 기준 242개 품목은 제1류 “산동물”(4품목), 제2류 “육과 식용 설육”(4품목),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189품목),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선품”(3품목),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2품목), 제13류 락·검·수지 및 그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1품목),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품성 납”(5품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30품목),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2품목),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1품목),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시멘트”(1품목)이다.

각 품목들에 적용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완전생산기준(WO),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부가가치기준(RVC)과 이들의 선택 또는 결합(조합)기준들을 주로 적용 중이다. 특히, 주요 수산물 교역 FTA인 한·EU, 한·미, 한·아세안, 한·중 FTA에서는 주로 완전생산기준(WO)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적용한다. 이는 엄격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적용 하는 기준이다.

연구 대상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산물 교역국들과 체결한 주요 FTA 4개의 협정을 설정하여 기존의 엄격성지수에 따른 지수를 산출해 보면 한·미 FTA만 5.9이고, 다른 3개의 FTA에서는 6.6~6.9의 지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는 엄격성지수 7인 완전생산기준(WO)을 아예 배제하고, 모든 품목을 불완전생선품으로 취급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의 다른 FTA에서는 지수 7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상당수 엄격성지수 6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적용되었다. 이 경우 제3류의 경우에는 왜곡이 발생 할 수 있다. 제3류는 어로 및 양식 등 생산과정에서 동일 류내에서만 세번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완전생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엄격성지수를 수산물에 특화하여 발전시켜 새로운 엄격성지수를 개발 하였다. 새로운 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미 FTA에서도 비교 대상 협정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1〉 주요 FTA 엄격성지수 비교

협정	엄격성지수(평균 값)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특화형 엄격성지수
아세안	6.74	6.74
EU	6.92	6.92
미국	5.99	6.77
중국	6.61	6.61

자료 : 저자 작성

이 지수는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인 고찰과 각 품목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에 더욱 더 적합하게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산물이 아닌 다른 산업 및 품목에 적합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향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엄격성지수가 우리나라의 FTA활용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를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안재진(2008),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효율화 방안”,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포럼·한국무역협회, pp.68
- 박진우, 박명섭, 최두원(2016), “우리나라 주요 FTA협정의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한·미 및 유럽권 협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pp.213-233.
- 박명섭, 조미진, 이병문(2014).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pp.59-85.
- 김은주, 한낙현(2003), “한국·칠레 및 칠레·EU간 FTA 협정에 관한 비교연구: 수산물 분야 양허 내용을 중심으로”, 「해양비즈니스」, 제1호 pp.158-173.
- 박진우(20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기업의 FTA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이명구(2007),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제도 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pp.357-376.
- 장근호(2005),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원산지제도”, 2005년 창립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정인교 외 3인(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방호경(2004),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4-11, 2004
- 이신규(2006), “한중 FTA 원산지규정 관련 협상전략”,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 정재우, 이길남(2012),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원산지 규정의 검토와 향후 논의 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7권 제4호, pp.51-80.
- 해양수산부(2016),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수산물 201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山神秀樹·牛島咪子(2009), “自由貿易協定における原産地規則の比較研究-原産地證明、原産地檢證制度に焦点を当てて-(1)”, 「貿易と關稅」, 日本關稅協會.
- Baldwin, R.(2006), Multilateralising : Spaghtti Bowls as Building Bloe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Working Paper1254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p.22-31

Estevadeordal, A. and Suominen, K.(2003),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 Alfredo G. A. Valladão and Roberto Bouzas(eds), Market Access for Goods and Services in the EU-Mercosur Negotiations, Paris: Chaire Mercosur de Sciences Po.

Estevadeordal, A.(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NAFTA," Journal of World Trade Vol.34 Issue 1, pp.141-166.

Estevadeordal, A., Harris, J. and Suominen, K.(2007), "Multilateral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ound the World," Paper Presented at the WTO/HEI/NCCR Trade/CEPR Conference, Geneva, Switzerland.

Estevadeordal, A and K, Suominen(2004),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Working Paper, No. 15.

# A Study on Restrictiveness Index of Product Specific Rule(PSR) under FTA: Focusing on the Fishery product

Yun-Seok Hur  
Myong-Sop Pak  
Jin-Woo Park

---

## Abstract

As an increasing number of the FTA, there have also been increasing interests in FTA utilization.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and implement the rules of origin for FTA utilization appropriately. However, due to the spaghetti bowl effect, the restrictiveness index, which is a measure of the degree of difficulty of meeting Product-Specific Rule(PSR) of origin, gets increased. Furthermore, there is a distortion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orrect restrictiveness index. Therefore, we implemented an enhanced method in a context of fishery product to correctly measure the restrictiveness index of Product Specific Rules (PSR) among the rules of origin.

---

(Key Words) Restrictiveness Index, Product Specific Rule(PSR), Fishery Product, FTA